

의안 검토 보고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0. 31.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따 로 붙 임
4. 검 토 의 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3년 11월 6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이 총 일

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본 안건은 2003년 10월 31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03년 11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확대에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의
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·시설·고용·
교육훈련 보조금, 입지·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로 기업의
효과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, 제2조).
- 나.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용지를 분양가격 이하로
공급 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4조).
- 다. 공장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
초과하는 금액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 지원, 본사
이전시 30명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30만원 이하의 이전보조금
지원 및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의 연구과제를 공동수행하는
이전기업에 대하여는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우대하여 지원
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(안 제5조).
- 라. 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이
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
시설보조금 지원근거를 정함(안 제6조).

- 마. 기업이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이전하여 시 관할구역안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3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 1인당 30만원 이하의 고용보조금 지원근거를 정함(안 제7조).
- 바.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이 시관할구역안에서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1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30만원이하의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근거를 정함(안 제8조).
- 사.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고,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은 시설투자비가 2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정하되 이전보조금, 시설보조금,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각 지원 한도액은 기업당 2억원으로 함(안 제9조).
- 아. 이전기업의 지방세감면, 공유재산지원 및 기업지원자금의 우대지원 사항을 명시함(안 제10조 내지 제12조).
- 자.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- 차.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기업유치심의위원회 및 기업유치기획단 설치운영 근거를 정함(안 제14조 내지 제18조).
- 카.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 및 교부목적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(안 제21조).

3. 검토의견

동 조례안은 제128회 임시회 기간동안 당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내용의 중복된 부분과 불명확한 조문 표현,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한 위원회설치 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되어 철회된후 다시 제출된 조례안 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용지를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공장시설이전보조금, 본사이전보조금, 공장시설보조금,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.
- 또한 이전기업의 지방세감면, 공유재산지원, 기업지원자금의 우대 지원 사항을 명시함.
-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함.
-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기업유치기획단 및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.

○ 당초 제출되었던 조례안과 비교하면

- 이전·시설·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지원 등 일부 중복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, “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수 없다”는 단서조항을 지원대상의 범위에 일괄 규정하였으며,
- “기업유치위원회”를 “기업유치심의위원회”로 명칭을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에 유치기업선정평가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 할수 있도록 신설하여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평가기능을 강화 하였음.
- 또한 조례안 본문 내용중 “정상 분양가격 이하의 저가”, “장기저가”, “6월이상 관할구역안에 거주한자”, “세제감면”, “관계인” 등 부적절한 용어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